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53494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은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5. 각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,110,449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,110,4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진정화

별지